

-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 -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시행 공고

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공개(경력)경쟁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4월 28일

강 원 도 지 사

① 필기시험 합격자 : 261명 【 명단 “붙임” 】

분야 합격	총계	경력경쟁 채용(강원도 채용)												
		공채		구급(경력)		구급상황관리사		구조		운전	특수차량 정비	소방관련 학과	도립대 장학생	항공 조종
		남	여	남	여	남	여	수난	일반					
인원	261	145	10	26	6	1	3	-	29	20	3	14	2	2

※ 필기시험 합격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 ~ 3배수(단, 커트라인 동점자는 합격 처리)

② 체력시험 시행계획

가. 시험일시 및 장소

응시분야	시험일시	장 소	응시인원
공개경쟁	2016. 5. 9.(월) 09:00 ~	춘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	145명
공개경쟁			10명
경력경쟁	2016. 5. 9.(월) 14:00 ~		6명
			3명
			26명
			29명
			20명
			3명
			1명
			14명
			2명
			2명

※ 응시자 등록 및 집결시간은 시험일시별 08:30 및 13:30까지이며, 채용분야별 지정된 시험일자 변경은 불가합니다.(응시자 시험시간은 붙임 명단 참조)

나. 대 상 자 :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

다. 시험종목 : 6종목(*자세한 사항은 붙임 및 당초 공고문 참조)

라. 응시자 준수사항

-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, 응시표, **반명함 사진 1매**를 지참하여 체력측정에 필요한 운동복 및 운동화 등을 착용하고, 분야별 시험시간 (08:30 또는 13:30)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·등록하여야 합니다.
- 체력시험 응시함에 있어 시험 중 본인 신체상의 건강상태, 질환, 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시험본부에서 제공하는 **시험용품 외 개인용품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스파이크 등 특수기능성 운동화 착용을 금합니다.**
- 응시자는 시험본부에서 안내한 시험 진행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실기위원,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**체력시험 측정 시 6개 종목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**하며, 체력시험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기준은 2016. 2. 23. 공고한 「2016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③ 도핑테스트 시행계획

가. 일 시 : 체력시험 종료 후

나. 대 상 자 : 체력시험 응시자의 7%(오전 10명, 오후 8명)

다. 선정방법 : 체력시험 시작 전 도핑테스트 설명 후 번호 추첨

라. 유의사항

- 도핑테스트 결과 **비정상분석(양성)**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, **합격을 취소**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**5년간**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**응시자격이 정지**될 수 있습니다.

※ 안내문 및 금지약물 『붙임3, 4』 참조

4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

가.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

일 시	지정병원명	준비물	수수료
2016. 5. 16(월) 09:00 ~ 16:00	강원대학교병원 (춘천시 백령로 156 / 033-258-2313)	응시표, 신분증, 반명함판 사진2매	본인 부담

※ 응시자 유의사항

- 공복상태로 강원도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 실시기관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」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당연 불합격 처리됩니다.

나. 적성검사

- 일 시 : 2016. 5. 17(화) 10:00 ~ 17:00
- 대 상 자 :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
- 검사방법 : 개인별 사이버검사(엔잡인재진단연구소, http://corp.jobtest.co.kr/gwd1_in)
- 유의사항 :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.

※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응시결과는 강원도 소방본부로 자동 송부되오니 별도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.

5 서류전형

가. 대 상 자 : 체력시험 합격자 전원

나. 제출일시 : 2016. 5. 26(목) 10:00 ~ 16:00 (중식시간 12:00 ~ 13:00)

다. 제출장소 :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

라. 제출방법 : 제출서류 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서류 우측 상단에 각각 응시번호, 성명,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제출서류(*모든 서류는 A4 규격으로 제출)

- ① 이력서 1부 ※ 서식“붙임파일”
- ② 자기소개서 1부 ※ A4 용지 2쪽 이내 워드작성, 서식“붙임파일”
- ③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
- 강원도 거주지제한 합격자 : '16. 5. 17.이후 발급분으로 '16. 1. 1.이전부터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

※ 응시연령 초과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

④ 증명서 및 자격(면허)증

- 가산특전 표기자 (공개경쟁 응시자)

- 자격(면허)증 및 사무관리 가산점 표기자 : 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사본 1통 또는 자격증발급기관의 자격증 확인서 1통

- 자격제한 응시자 (경력경쟁 응시자)

- '16. 2. 23. 공고된 공고문에서 정한 경력 및 자격증명서 각 1통
- 소방관련학과 : 졸업증명서,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각 1통

- 공 통

-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증 사본 1통
-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: 국가보훈처, 지방보훈지청, 보건복지부, 시·구·군에서 발급한 대상자 증명서 1통

※ 사본 제출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담당 직원에게 대조 확인필

바. 유의사항

-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.

6 기 타 [성적조회 등]

가.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안내(*전화문의 불가)

-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은 2016. 4. 28(목) ~ 12. 30(금) 09:00 ~ 18:00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 로그인후 합격/성적조회 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, 그 이후에는 성적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.

나.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안내(*전화문의 불가)

-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은 2016. 6. 28(화) ~ 12. 30(금) 09:00 ~ 18:00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로그인후 합격/성적조회 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성적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.

다. 시험일시·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.

라. 필기시험 불합격자 채점결과(답안지) 확인은 2016. 4. 29. ~ 5. 3.까지 응시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며, 확인기간 후에는 불가합니다.(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)

※ 답안지와 점수만 확인가능하며, 문제책 및 정답은 비공개입니다.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(☎249-5114)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

-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 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

◀ 응시번호순 : 261명 ▶

공개경쟁 : 155명

◇ 소방(남) 도 일괄 : 145명

82190006 유○옥,	82190007 김○옥,	82190008 이○재,	82190011 윤○옥,
82190012 주○경,	82190014 이○철,	82190015 이○찬,	82190016 황○재,
82190022 고○수,	82190028 김○수,	82190044 박○현,	82190045 오○석,
82190048 김○만,	82190051 손○호,	82190057 김○수,	82190061 이○인,
82190062 원○옥,	82190073 김○우,	82190083 박○몽,	82190085 최○호,
82190091 김○철,	82190095 김○영,	82190114 김○명,	82190119 박○수,
82190121 김○성,	82190122 이○범,	82190124 김○준,	82190136 임○균,
82190138 남○민,	82190142 권○호,	82190146 김○용,	82190148 정○교,
82190155 박○석,	82190156 최○준,	82190162 남○일,	82190164 최○준,
82190169 김○일,	82190171 길○상,	82190172 고○규,	82190174 이○표,
82190179 김○일,	82190198 임○규,	82190200 황○민,	82190202 이○관,
82190208 김○훈,	82190212 구○용,	82190213 최○만,	82190215 설○수,
82190216 서○원,	82190220 임○선,	82190222 박○근,	82190228 신○성,
82190238 김○준,	82190239 김○수,	82190248 민○영,	82190253 박○민,
82190258 엄○현,	82190261 윤○일,	82190271 손○국,	82190273 최○준,
82190277 조○식,	82190286 안○준,	82190290 최○순,	82190296 이○훈,
82190306 이○희,	82190322 황○석,	82190323 이○정,	82190324 전○병,
82190329 김○준,	82190339 조○호,	82190343 문○환,	82190356 김○철,
82190357 김○일,	82190363 강○근,	82190380 남○수,	82190386 최○호,
82190391 이○호,	82190394 심○윤,	82190395 이○규,	82190396 이○승,
82190401 배○환,	82190402 심○보,	82190403 신○선,	82190404 이○주,
82190407 김○윤,	82190409 박○민,	82190412 이○주,	82190422 이○철,
82190424 김○찬,	82190426 지○배,	82190436 강○구,	82190447 장○우,
82190449 최○섭,	82190464 박○용,	82190465 남○형,	82190468 정○현,
82190473 이○영,	82190479 박○진,	82190485 이○영,	82190493 이○식,
82190495 김○우,	82190498 박○우,	82190516 이○환,	82190534 이○성,

82190538 최○윤,	82190542 권○근,	82190551 송○우,	82190560 김○균,
82190561 김○균,	82190564 조○호,	82190569 최○기,	82190576 김○식,
82190594 최○현,	82190597 이○규,	82190601 이○하,	82190605 문○현,
82190607 유○선,	82190610 최○두,	82190611 윤○기,	82190612 정○길,
82190615 김○현,	82190619 황○재,	82190621 김○환,	82190634 김○기,
82190649 정○수,	82190650 김○하,	82190653 양○모,	82190654 김○규,
82190656 유○택,	82190659 최○균,	82190664 이○민,	82190665 이○현,
82190692 마○형,	82190693 김○훈,	82190696 금○득,	82190698 홍○철,
82190699 임○빈,	82190716 김○현,	82190722 정○민,	82190728 정○서,
82190731 김○민,	82190738 이○희,	82190751 김○빈,	82190753 최○윤,
82190756 이○준			

◇ 소방(여) 도 일괄 : 10 명

83190008 박○연,	83190009 김○정,	83190012 김○보,	83190025 권○나,
83190029 조○정,	83190032 이○희,	83190039 김○혜,	83190043 이○선,
83190047 최○애,	83190053 최○애		

경력경쟁 : 106명

◇ 구급경력(남) : 26명

86190001 박○관,	86190007 손○목,	86190008 여○조,	86190009 류○영,
86190012 박 ○,	86190013 이○수,	86190014 최○규,	86190015 전○문,
86190018 정○수,	86190023 유○환,	86190025 변○희,	86190028 신○우,
86190030 이○재,	86190033 김○성,	86190034 김○일,	86190035 이○균,
86190036 황○동,	86190037 이○훈,	86190041 김○진,	86190044 이○원,
86190045 김○영,	86190046 용 ○,	86190047 정○길,	86190049 남○곤,
86190050 김○훈,	86190051 권○선		

◇ 구급경력(여) : 6명

87190002 박○은,	87190006 김○하,	87190012 이○미,	87190023 장○주,
87190030 전○희,	87190035 권○정,		

◇ 구급상황관리사(남) : 1명

79190001 홍○기

◇ 구급상황관리사(여) : 3명

88190001 권○미, 88190003 신○진, 88190004 이○주

◇ 구조 일반(남) : 29명

84190002 황○기,	84190009 강○우,	84190017 이○호,	84190021 최 ○,
84190022 김○희,	84190027 최○웅,	84190028 송○진,	84190034 김○현,
84190036 최○수,	84190037 박○기,	84190038 용○중,	84190041 정○진,
84190045 김○민,	84190052 권○호,	84190063 김○준,	84190064 오○도,
84190065 이○빈,	84190067 양○철,	84190070 박○권,	84190071 최○락,
84190075 김○호,	84190083 전○현,	84190087 이○범,	84190088 조○화,
84190091 전○진,	84190097 이○기,	84190100 배○우,	84190102 황○현,
84190104 엄○선			

◇ 운전(남) : 20명

92190004 정○원,	92190005 최○식,	92190007 김○곤,	92190008 조○형,
92190012 이○우,	92190014 조○준,	92190015 전○재,	92190019 윤○덕,
92190020 김○경,	92190021 김○호,	92190022 이○경,	92190024 강○영,
92190028 남○길,	92190030 김○구,	92190036 호○진,	92190038 도○수,
92190039 정○욱,	92190040 김○철,	92190047 백○근,	92190051 김○호

◇ 특수차량정비 : 3명

81190001 안○희,	81190004 안○범,	81190011 서○일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◇ 소방관련학과 : 14명

89190002 장○솔,	89190007 정○원,	89190009 김○수,	89190015 이○규,
89190017 전○우,	89190019 김○섭,	89190020 김○우,	89190025 이○민,
89190027 한○호,	89190028 박○원,	89190044 조○진,	89190045 최○형,
89190056 김○우,	89190060 유○균		

◇ 도립대 장학생 : 2명

93190001 이○현,	93190003 손○영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◇ 항공분야(조종) : 2명

85190001 강○석,	85190002 박○수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[붙임 1]

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제23조의2

■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

종 목	성별	평 가 점 수									
		1	2	3	4	5	6	7	8	9	10
악력 (kg)	남	45.3~ 48.0	48.1~ 50.0	50.1~ 51.5	51.6~ 52.8	52.9~ 54.1	54.2~ 55.4	55.5~ 56.7	56.8~ 58.0	58.1~ 59.9	60.0 이상
	여	27.6~ 28.9	29.0~ 30.2	30.3~ 31.1	31.2~ 31.9	32.0~ 32.9	33.0~ 33.7	33.8~ 34.6	34.7~ 35.7	35.8~ 36.9	37.0 이상
배근력 (kg)	남	147~ 153	154~ 158	159~ 165	166~ 169	170~ 173	174~ 178	179~ 185	186~ 194	195~ 205	206 이상
	여	85~ 91	92~ 95	96~ 98	99~ 101	102~ 104	105~ 107	108~ 110	111~ 114	115~ 120	121 이상
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(cm)	남	16.1~ 17.3	17.4~ 18.3	18.4~ 19.8	19.9~ 20.6	20.7~ 21.6	21.7~ 22.4	22.5~ 23.2	23.3~ 24.2	24.3~ 25.7	25.8 이상
	여	19.5~ 20.6	20.7~ 21.6	21.7~ 22.6	22.7~ 23.4	23.5~ 24.8	24.9~ 25.4	25.5~ 26.1	26.2~ 26.7	26.8~ 27.9	28.0 이상
제자리 멀리 뛰기 (cm)	남	223~ 231	232~ 236	237~ 239	240~ 242	243~ 245	246~ 249	250~ 254	255~ 257	258~ 262	263 이상
	여	160~ 164	165~ 168	169~ 172	173~ 176	177~ 180	181~ 184	185~ 188	189~ 193	194~ 198	199 이상
윗몸 일으 키기 (회분)	남	43	44	45	46	47	48	49	50	51	52이상
	여	33	34	35	36	37	38	39	40	41	42이상
왕복 오래 달리기 (회)	남	57~59	60~61	62~63	64~67	68~71	72~74	75	76	77	78이상
	여	28	29~30	31	32~33	34~36	37~39	40	41	42	43이상

【붙임 2】

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」 제7조

■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

종 목	측 정 방 법 등
<p>악 력 (kg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스메들리(smedley)식 악력계 ○ 측정 단위 : kg ○ 측정 방법: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,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 ※ 장갑 착용불가(미끄럼 방지 탄마가루는 시행본부 제공)
<p>배 근 력 (kg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배근력계 ○ 측정 단위 : kg ○ 측정 방법 :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°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.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 ※ 장갑 착용불가(미끄럼 방지 탄마가루는 시행본부 제공)
<p>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(cm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(전자식 측정기 가능), 매트 1개 ○ 측정 단위 : cm ○ 측정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.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. -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. - '시작'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. -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. -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. -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 ※ 유의사항 :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.

종 목	측 정 방 법 등
제자리 멀리뛰기 (c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구름판 및 모래티(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)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○ 측정 기록 : cm ○ 측정 방법 :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,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,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(신체의 어느 한 부분)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윗몸 일으키기 (회/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매트(윗몸일으키기대,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○ 측정 기록 : 회 ○ 측정 방법 :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° 이상 일으킨다.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.
왕복오래 달리기 (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(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소 길이 20m,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-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-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- 녹음 CD : 별도 ○ 측정 기록 : 단위(회) ○ 측정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. - 출발신호원의 '출발'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. -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'출발'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 -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. -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. - '출발' 신호가 울릴 때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초 1회는 신호가 울릴 때 방향을 바꾸어 달릴 수 있으나 두 번째로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된다. -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. -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.

비 고 :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(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)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『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』 안내문

□ 도핑테스트 시행안내

-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,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(도핑테스트)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□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

- 「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(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-7호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(별지 참조)은 금지됩니다.

□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

-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

- 채취된 소변 시료(A, B)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,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,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.
-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-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,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,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.
-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,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,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,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,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,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.
-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,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□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

- (의의)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(신청절차)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,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(단,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)
- (승인기준)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.

- ▶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.
- ▶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.
- ▶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.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,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에는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에 따라 **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**됩니다.

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

I 금지약물

○ 『소방공무원임용령』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.

1. 동화작용제 : 총 7종 및 그 1)대사물질

가.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AAS)

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(Exogenous AAS)

- ▶ 드로스타논론(drostanolone)
- ▶ 메티놀론(methenolone)
- ▶ 메타스테론(methasterone)
methasterone(17 β -hydroxy-2 α ,17 α -dimethyl-5 α -androstan-3-one)
- ▶ 스타노졸롤(stanozolol)
- ▶ 1-테스토스테론(1-testosterone)
1-testosterone(17 β -hydroxy-5 α -androst-1-en-3-one)

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Endogenous AAS)

- ▶ 테스토스테론(testosterone)

나. 기타 동화작용제 : 클렌부테롤(Clenbuterol)

2. 이뇨제 : 총 3종

- ▶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(hydrochlorothiazide)
- ▶ 클로로티아지드(chlorothiazide)
- ▶ 푸로세마이드(furosemide)

1) 대사물질 :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

3. 흥분제 : 총 3종

- ▶ 메틸헥산아민 (methylhexaneamine, dimethylpentylamine))
- ▶ 메틸 에페드린 (methylephedrine)
- ▶ 에페드린 (ephedrine)

※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.

4. 마약류 : 총 11종

- ▶ 부프레노르핀 (Buprenorphine)
- ▶ 덱스트로모라미드 (dextromoramide)
- ▶ 헤로인 (diamorphine, heroin)
- ▶ 펜타닐 (fentanyl) 및 유도체
- ▶ 히드로모르폰 (hydromorphone)
- ▶ 메타돈 (methadone)
- ▶ 모르핀 (morphine)
- ▶ 옥시코돈 (oxycodone)
- ▶ 옥시몰폰 (oxymorphone)
- ▶ 펜타조신 (pentazocine)
- ▶ 페티딘 (pethidine)

II 금지방법

- 『소방공무원임용령』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(소변 바꿔치기 및/또는 섞기,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.)

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

1. 응시자 인적사항

1. 성명: _____	2. 성별: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
3. 생년월일: _____	4. 응시번호: _____
5. 핸드폰: _____	6. 이메일: _____

2. 의료정보

1)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

2)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,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

※ 진단 증빙자료(진단서, 처방전, 소견서 등)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,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,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,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.

3. 세부 진료내용

금지약물	1회 사용량	사용방법	사용빈도
1.			
2.			
3.			

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:	1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응급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(주/월) _____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4. 담당의사 서약

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,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.

성명: _____ 전공분야: _____

주소: _____

전화: _____ 팩스: _____ 이메일: _____

서명: _____ 날짜: _____

5. 응시자 서약

본인, _____는(은)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.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,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.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.

서명: _____ 날짜: _____

부모/보호자 서명: _____ 날짜: _____

(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.)

※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,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.
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.

【붙임 5】

수험번호

성명

작성예시

이 력 서

사 진
(응시원서와
동일 사진)

• 응시직류 : • 응시지역 : • 응시번호 :

□ 기본사항

- 성 명 : (한 자 :) * 사실확인 (서 명)
- 주민등록번호 : (세)

□ 학력사항(고등학교 이상만 작성)

기 간	학 교 명	학 과	비 고 (졸업, 수료, 재학 등)
~			
~			
~			

□ 주요 경력사항

기 간	관 련 내 용	비 고 (발령처, 근무부서)
~		
~		
~		

□ 자격 및 면허 취득 사항

- 자격, 면허 :

□ 기타사항 ※ 증빙서는 제출하지 않음

- 외국어 부문 : 영어·중국어·일어 등 어학능력 검정 사항
- 컴퓨터 활용 : 기본 OA 및 문서작성 능력
- 자원봉사 활동 :

※ 제시된 형식을 참고로 서식 및 내용 변경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작성

[붙임 6]

작성예시

자기소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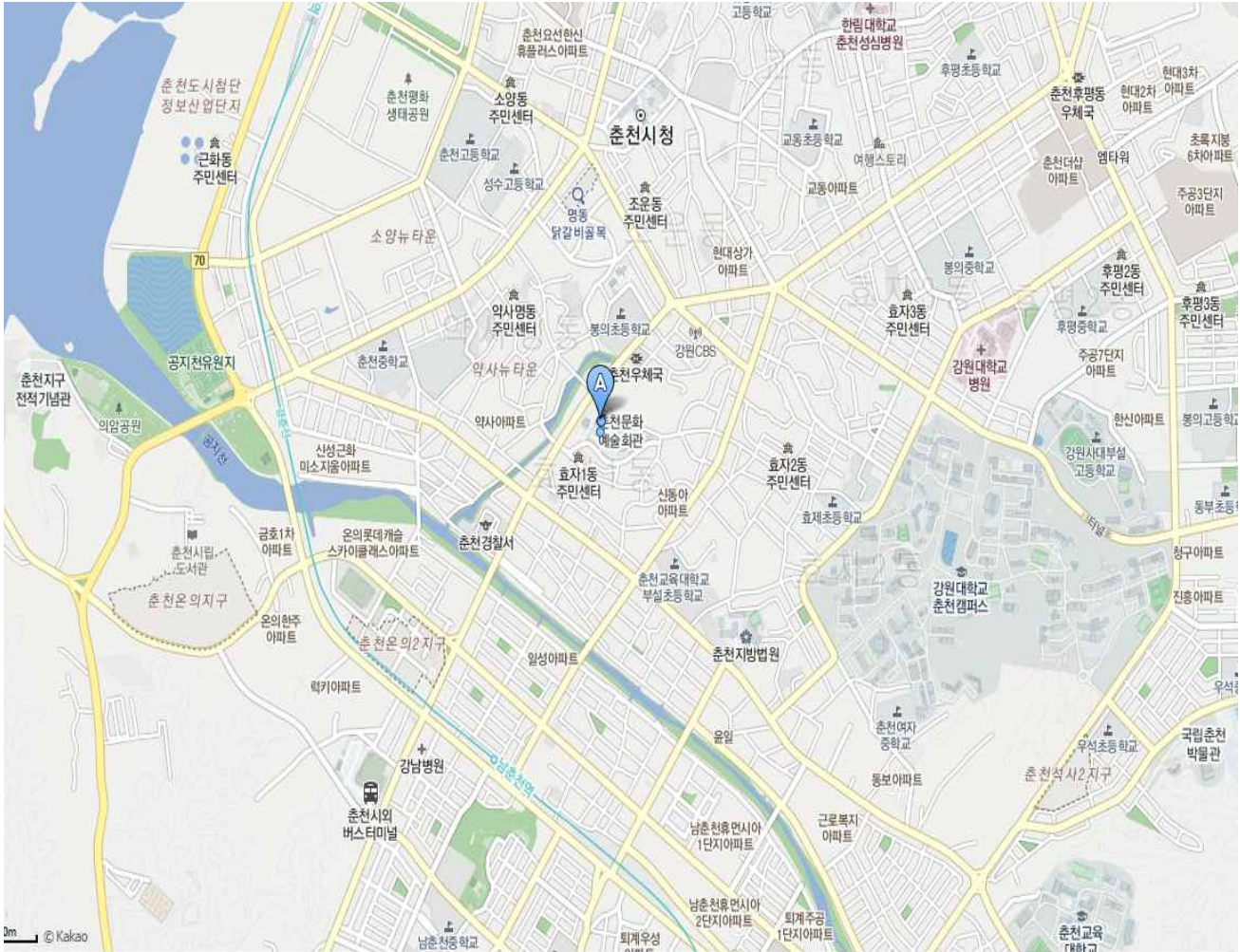
직 류	지 역	응시번호	성 명	전화번호
				자택 H.P

(분량 : A4용지 2쪽 이내)

- 성장과정, 성격의 장단점, 지원동기, 앞으로의 각오 등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
- 적성, 특기, 관심분야 등

※ 바탕체 12포인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장 약도



□ 춘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주소
-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산 40-2